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신청 접수 수정 공고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시흥산업진흥원

<주요 수정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신청업체와 근로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식 통합형	○ 객체별 개인정보수집 동의 이용 서식 분리 (수집 범위 상이) ○ 소상공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내용 추가(필수 요건)
제출서류 (업체-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소상공인 업체 제출)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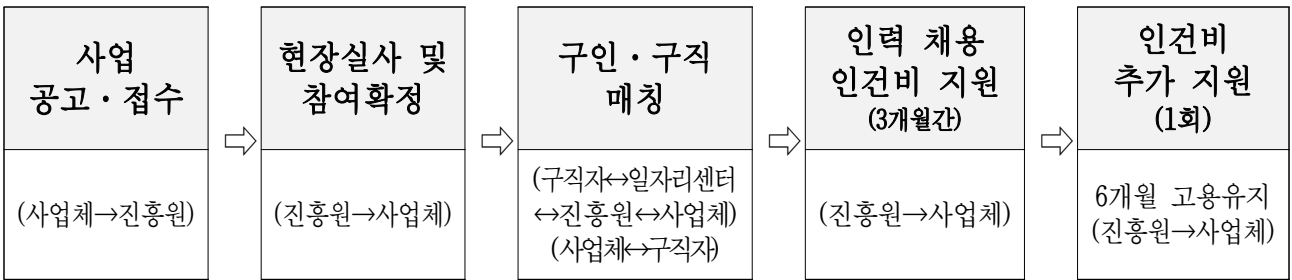
- **지원기간** :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 고용 유지시 추가 1회 지원)
※단, 사업기간(모집일(3월 4일) ~ 11월말) 내에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외) 2022~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 (제외) 무점포 업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 ※ 행정지도 일시휴업은 신청가능
 - (제외) 도박, 유흥주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붙임)
- **지원내용** :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00원(주 40시간 이상 근로, 6개월 고용유지 기준)
※ 최저시급 월 인건비 50% 수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3개월 채용유지시 3,000,000원 + 3개월 추가 채용유지시(누적 6개월) 1,000,000원

- 지원방법 : 3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고용유지시 1회 추가지원
- 지원범위 : 1개 사업장별 1인 신규 구직자 지원

□ 지원과정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3월 4일 ~ 예산소진시까지

○ 참여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요령
①	참가신청서	붙임2
②	구인신청서	붙임3
③	사업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림) 처리)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근로자수 확인용)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발급 (1인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같음)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붙임7 , 사업주용 작성 후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 접수문의

-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6074)

3. 선발 및 결과통보

□ 선발방법

-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선발
- 업체 방문 과정에서 참여신청 서류 대조 확인
(근무장소 및 실제 운영 여부 확인)

□ 신청자 유의사항

- 자격미달, 허위사실 및 착오기재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
- 등록기간 내 서류 미 제출시 무효처리
- 동일한 사업주가 다수 업체 운영 중에 각각 참여를 희망할 경우,
*구인 시급 업체 1개를 참여 확정하고, 그 외 업체는 **후순위로
두어 참여자 신청이 저조한 경우에만 1개 업체까지 추가 참여 허용
*구인 시급 업체 : 업체 희망 수요처 선택
**후순위 선발 : 업체당 추가로 1개 업체까지 지원

□ 결과통보 : 현장 실사 후 개별 통보

4. 구인·구직 매칭

□ 매칭방법

- ① 구인업체 신청 서류 접수 후 요건 확인(진흥원)
- ② 구인신청서류 기반 워크넷 구인등록(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 ③ 희망 요구조건(직군, 거주지,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매칭 지원(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 유의사항

- 신규 인원 매칭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장 자체 구인 병행 필수
- 사업 참여 확정일 기준 한 달 내 구인 불가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자격미달, 허위사실, 착오기재 등 불공정 매칭 시 지원 불가
예시① : 기존 직원을 신규인 것처럼 재 채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예시② : 시흥시에 사업자등록과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신청했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주의 사유로 중도퇴사자가 2명 초과 발생 시 해당업체에 대한
인력 매칭이 중단될 수 있음

4-1. (참고)구직자 신청

□ 모집규모 : 100명 내외

○ 참여자격 :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시흥시민

①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

○ 참여제한 : 사업주의 가족(사업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예정)

□ 모집방법

○ 워크넷을 통한 구인공고에 구직자가 직접 신청

- 진흥원 별도 접수 없음

○ 구직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이용

(과림동, 연성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는 창구 미운영으로 불가 → 다른 동 이용 가능)

② 온라인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오른쪽 구직신청 탭 (www.work.go.kr)

5. 근로계약 체결

□ 구직자 채용 후 업무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

○ 채용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으로 유선 통보 후 10일 이내 서류 제출

○ 송부주체 : 소상공인(사업주) → 시흥산업진흥원

○ 제출서류 : 사본제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요령
①	근로계약서	붙임4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7 , 근로자용 양식 작성 후 제출
③	(구직자)주민등록등본 (시흥시 거주 여부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림) 처리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일시적 퇴사처리 여부 확인용)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주가 발급(문의: 1588-0075) -발급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사업장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기간 : 2024-01-01 ~ 신청당일 / 발급범위 : 전체근로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부터 채용장려금 지급 가능
- 임금은 계좌이체 원칙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전 구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시흥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등본상 거주지가 관외로 표기되어 있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장려금 지급 불가
- 공고일 이후 퇴사 처리 및 재채용 여부 발견시 해당 근로자 불인정
- 근로자 임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저시급(9,860원) 및 주휴수당(일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야 함
- ※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 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 ※ 사업장성립신고, 보험가입 등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 : 국민연금-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6. 채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소상공인(사업주) → 구직자(근로자) 임금지급 후 신청
- 신청기간 : 신규 채용 3개월차 급여이체 완료 후 10일 이내
(6개월 고용유지시, 6개월 급여이체 완료 후 1회 추가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요령
①	채용장려금 신청서	붙임5
②	출근부	붙임6 , 업체 내 별도 출근부 사용시 변경 가능
③	업체명의 통장사본	사업주명 혹은 사업장명과 일치해야 함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https://www.4insure.or.kr/)
⑤	급여이체 내역	은행발급 이체확인증(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과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지급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00원

〈 주 근로시간 별 채용장려금(월) 지급 기준 〉

근무시간	채용장려금(월)	근무시간	채용장려금(월)	근무시간	채용장려금(월)
주40시간 이상	1,000,000	주32시간	800,000	주24시간	600,000
주39시간	980,000	주31시간	770,000	주23시간	570,000
주38시간	950,000	주30시간	750,000	주22시간	550,000
주37시간	920,000	주29시간	720,000	주21시간	520,000
주36시간	890,000	주28시간	700,000	주20시간	500,000
주35시간	870,000	주27시간	670,000		
주34시간	850,000	주26시간	650,000		
주33시간	820,000	주25시간	620,000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의 채용장려금 신청**

- 진흥원에 근로자 중도 퇴사 고지 후, 퇴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승계 가능
 (※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이 없을 시 잔여 예산 방지를 위하여 타업체 우선 지원)
- 최초 3개월 기간의 경우, 근로자 퇴사 후 중도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월 단위로 지급하며(일할계산하지 않고 내림), *1개월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용장려금 미지급
 *1개월이란 근로계약서상 만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일과 상이할 경우, 출근부 및 급여 지급 내역과 대조하여 산정
- 후반 3개월 기간의 경우, 근로자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이 없을 시 추가 고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장려금 미지급
- 사업주의 고의적인 근로자 중도해고 및 채용장려금 반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당 채용장려금은 최대 4회에 대한 잔여분으로 한정

(예) 50일 근무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① 중도포기 의사 전달시 : 1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며, 20일 근무분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음
- ②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시 : 기존 50일에 계속 이어서 사업 참여 가능
- ③ 2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 채용을 못해 중도포기로 1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후 신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져 사업 재참여를 원하는 경우
 - ☞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재참여 가능
 - ☞ 해당 업체의 채용장려금은 이전과 다른 근로자 고용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만 지원 (최초 2개월간 1회씩, 누적 6개월 고용유지시 추가 1회 지급)

□ 지급시기 및 횟수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시 1회 3개월분(최대 3,000,000원) 지급.
이후 3개월(누적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 1개월분(최대 1,000,000원) 지급
※ 직원 중도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 최초 3개월은 매월 1개월분씩(최대 1,000,000원) 분할 지급 가능
- 3개월 임금 지급 및 채용장려금 신청서 접수(증빙서류 제출완료) 후 지급
- 지급예정일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지급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 사업장 영업 여부 및 해당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진행(매월 1회 이상, 미예고 방문)
 - 업무시간(근로계약 기준) 내에 진행된 현장실사에서, 특별한 사유(연가, 병가 등) 없이 사업장 영업이 중지된 상태이거나 근로자가 부재인 경우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중지됨(사유를 증빙해야 지급 가능)

7. 기타사항

- 4대보험 가입 등의 애로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활용 권장(참고자료)
 - 대상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 내용 :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
 -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사무대행기관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0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6074)

- 붙임**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1부.
 2. 참가신청서(사업 참가 신청서) 1부.
 3. 구인신청서 1부.
 4. 표준근로계약서(안) 1부.
 5. 채용장려금 신청서 1부.
 6. 출근부 서식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8. 사업장 현장 확인서 1부.

참고 4대보험 가입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끝.

【붙임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산업분류	업종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기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업(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주장 운영업(91113)	경주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권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 필수 작성 사항

(2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업체 현황	사업체명	※ 지사인 경우 지사 이름까지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명
	사업내용				
	주소	(우편번호:)		(사업자등록증명상 주소를 적습니다)	
구인 사항	채용제목				
	모집직종		모집 인원	명	
	직무내용	※ 워크넷으로 구인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준 직무내용이 구인신청인에게 제공됩니다.			
	경력	[] 신입	[] 경력(년 월 이상, [] 필수 [] 우대)	[] 관계 없음	
	학력	[] ~ [] [] 관계 없음			
	자격·면허	[] 관계 없음 [] 필수 [] 우대			
근로 조건	임금	[] 시급 [] 일급 []원 ~ []원	상여금 별도 ()%	*산정기준 []연봉 []기본급	
		[] 월급 [] 연봉]원	협의가능		[] 임금 [] 근무시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 ~ :) 주()일 ()시간	()조 ()교대 [] 격일	※ 소정근로시간을 적고, 상시적인 연장근로 등 특이사항은 그 밖의 구인기업 희망사항란에 적습니다.	
	근무장소	(우편번호 :)			
		[] 사업장 주소와 동일 [] 사업체 지사 [] 다른 사업체	[] 재택근무가능		
	퇴직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등)			
고용형태 (중복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시간(선택)제 [] 대체 인력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개월)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 [] 계약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파견 근로 [첨부서류 제출]		
전형 사항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기타()			
	접수방법	[] 방문 [] 전자우편 [] 워크넷 입사지원시스템 [] 기타()			
		[] 우편 [] 팩스 [] 자사 채용사이트(주소:)			
	전형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접수 마감일	년 월 일까지	구인 종료일	년 월 일까지		
	※ 적지 않은 경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봅니다.		※ 적지 않은 경우 구인 종료일은 채용 시까지로 봅니다.		
채용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휴대전화	[] 공개, [] 비공개			
	전자우편	[] 공개, [] 비공개			

【붙임4】 표준근로계약서(안)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참고자료] 4대보험 가입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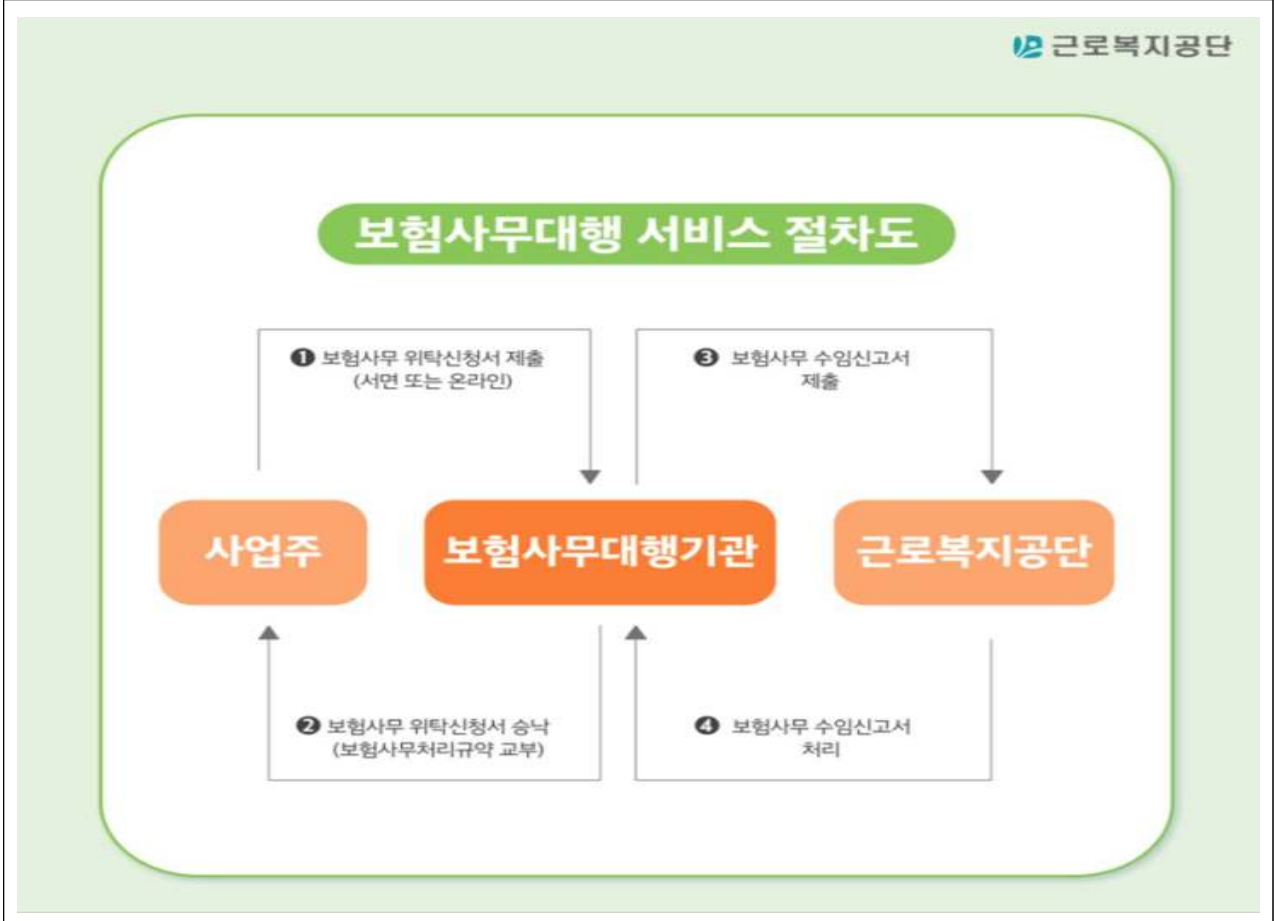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 서비스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및 정확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5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대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대행.
(단,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 미만인 사업주에 한정)

보험사무대행 이용방법 및 절차

- 1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서면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온라인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 서면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온라인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를 통해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 → 민원접수 / 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보험사무대행 이용방법 및 절차

- 2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 통보 및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교부**합니다.

※ 불승낙 통보 : 보험사무대행 가능 사업장수 초과 등에 따라 불승낙 통보될 수 있으며, 불승낙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 3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 4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전국 보험사무대행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 고객센터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navigation bar with the following items: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고객센터, 공단소개, **가입납부**, 산재보상, 재할.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ain content area with a large button labeled '가입·납부서비스' and a list of services. The '보험사무대행기관' (Insurance Agency) item in the list is highlighted with a hand cursor icon.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가입·납부 서비스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 탭을 참고해주세요!